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 10. 23.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1. 제출자:** 성동구청장

## 2.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 (안 제4조)

- 협의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

라.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나. 예산조치: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원 반영
- 다. 규약전문: 별첨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회에 따라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협의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지방교육 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방교육 발전 도모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사무 처리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만큼, 협의회가 기능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